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화된 물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 내 하부 조직 재편과 기능을 조정하고 홍수·가뭄 등 물재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관리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도시침수예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면서 수자원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하고, 하천 유지·보수 및 수해 피해복구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물관리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하천안전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8.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하며,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을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통합정책관”을 “수자원정책관”으로,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제3항제22호부터 제38호”를 “제10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1호”를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수자원개발과·하천계획과·물재해 대응과·하천안전팀·물환경정책과·수질수생태과·생활하수과·물 이용정책과·수도기획과·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물 관리총괄과장·수자원개발과장·하천계획과장·물재해대응과장·물 환경정책과장·수질수생태과장·생활하수과장·물이용정책과장·수도기획과장·토양지하수과장 및 물산업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 행정사무관 및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6. 물관리 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제방 계획의 수립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5.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7.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9.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0.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환경부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3.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14.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허가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고시에 관한 사항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

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낙시금지구역 및 낙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9.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9.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⑩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조정
2.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⑪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먹는 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7.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4조의3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침수예보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관측설비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4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별표 2의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중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강원도”를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중 “경기도 · 전라북도”를 “경기도 ·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주시 · 제천시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한탄강과 그 지류를 말한다) 및 낙동강수계는 제외하고,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북한강과 그 지류,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를 말한다) 및 경상북도 내 한강수계를 포함한다. 다만, 하천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상류구간을 관할한다]

별표 3의 전북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제외한다)

별표 5의2의 한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중 “제외한다) · 강원도”를 “제외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 · 전라북도”를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금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중 “경기도·전라북도”를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란 중 “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의3의 섬진강홍수통제 출장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란 중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남도”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를 “2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6”을 “27”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29”를 “31”로 하며,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5”를 “2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6”을 “27”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29”를 “31”로 하며,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를 “18”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0”을 각각 “39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8”을 “7”로 하며, 공업연구사·농업연구

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56”을 “55”로 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9”를 “37”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4”를 각각 “2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1”을 각각 “73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29”를 “128”로 하며,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2”를 “3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72”를 “71”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2”를 각각 “73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32”를 “131”로 하며,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32”를 “31”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66”을 “65”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9”를 각각 “348”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9”를 “57”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2”를 “54”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1”을 각각 “35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2”를 “6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8”을 “60”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8”을 각각 “67”로 하고, 행정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9”를 각각 “68”로 하고, 행정서기 “3”을 “2”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2”를 각각 “176”으로 하고,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7”을 “31”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72”를 각각 “176”으로 하고, 공업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27”을 “31”로 한다.

별표 17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9”를 각각 “117”로 하고, 4급 이하 “116”을 “114”로 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3”을 각각 “102”로 하고, 4급 이하 “70”을 “69”로 한다.

별표 1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1명 (5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물관리정책실 물관리정책관 물재해대응과	4명 (5급 2명, 6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3조제8항 관련 한시 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 3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하천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계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4명(9급 1명, 연구사 3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 유역환경청의 정원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지방환경청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생략)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u> 으로 하며, <u>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u> 및 <u>수자원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u> 으로 하며, <u>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u> 및 <u>물이용정책관</u> ----- ----- ----- -----.
③ <u>물통합정책관</u> 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u>제21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u>수자원정책관</u> ----- ----- ----- <u>제22호</u> ----- -----.
④ <u>물환경정책관</u> 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2호부터 <u>제38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u>제10조제3항제23호</u> 부터 <u>제43호</u> ----- -----.
⑤ <u>수자원정책관</u> 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u>제61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u>물이용정책관</u> 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4호부터 <u>제63호</u> ----- -----.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정책총괄과 · 물이용기획과 · 토양지하수과 · 물환경정책과 · 수질수생태과 · 생활하수과 · 수자원정책과 · 하천계획과 · 수자원관리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물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 ·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 · 수자원개발과 · 하천계획과 · 물재해대응과 · 하천안전팀 · 물환경정책과 · 수질수생태과 · 생활하수과 · 물이용정책과 · 수도기획과 · 토양지하수 --- 물관리총괄과장 · 수자원개발과장 · 하천계획과장 · 물재해대응과장 · 물환경정책과장 · 수질수생태과장 · 생활하수과장 · 물이용정책과장 · 수도기획과장 · 토양지하수과장 및 물산업협력과장 -- 서기관으로, 하천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 · 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6.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7.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9.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2.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도시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5의2.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통합 정책에 관련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6. 물관리 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4.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물이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4.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
한 사항
6.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
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
리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
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
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
구·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
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
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11. 친수구역 조성
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한 사항

- 14.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5.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16.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17.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18. 샘물 허가에 관한 사항
- 19.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20.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1.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 22.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23.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4.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5. 삭제
- ⑨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항

-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규모제방 계획의 수립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항

13. 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연구 및 발전

14. 지하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사·관측·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6.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7.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1.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⑩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15.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

3. 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5.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2. 호소의 물환경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3. 납시금지구역 및 납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16.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에 보시설의 설치 추진

7.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9.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0.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환경부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3.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사항

17.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9.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20.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1. 오염총량관리 관련 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2.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4.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

항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
대책의 수립

35.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36.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
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37.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
터링에 관한 사항

38.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
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
한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
항

39.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9의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
도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39의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의4.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⑪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허가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0. 삭제

1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2. 삭제

1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
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14.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15.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20. 삭제

21.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
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3.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24.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26.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8.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29.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⑫ 삭제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
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
금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
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
립에 관한 사항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고시에 관
한 사항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
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
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
한 사항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
항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
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중

⑬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

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

항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낙시금지구역 및 낙시제한

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

리에 관한 사항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

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

된 사항

⑭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
- 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중합·조정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14.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8.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9.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1.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⑭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연구 및 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5.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한 사항

6.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수민물화 및 지하수·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4.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5.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6. 지역협의회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7. 댐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관한 사항

18.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0.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21.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
한 사항

22. 댐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
산관리에 관한 사항

23. 댐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24.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
무로서 수자원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⑮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
구·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
선에 관한 연구·발전

5. 하천의 지정·해제 및 등급

가스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
· 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19. 바이오가스 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조정
에 관한 사항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
리에 관한 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하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관련 연구개발·조사 및 연구사업

13.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4.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7. 방수로·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8.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9.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물관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19. 남북간 하천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0.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21.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 및 친환경 하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2.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23. 하천관리원·하천보수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하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수계별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⑩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강우레이더 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⑩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조정

2. 상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가뭄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
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
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
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시침수 대응에 관한 사항

13. 환경부 홍수대책 상황실 운
영 등 홍수 대응에 관한 사항

14.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중장
기 발전방안 수립

16.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
항

17. 친수구역 조성 차별화 전략
· 비전의 수립

18. 친수구역 조성 정책 추진 및
효과 분석

19. 친수구역 관련 법령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
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친수구역 조성 관련 세부기준, 지침 등의 마련 및 운용
21.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2.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3.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관계 기관 협의
24.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관리
26.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의 수립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환수
27. 친수구역조성사업 홍보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8.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⑰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수자원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

수립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수에 관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⑱ 삭제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5.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
리 지원 및 협약에 관한 사항

16. 먹는 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7.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
한 사항

19.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
사에 관한 사항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
· 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
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UN, OECD 등)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 ③

제34조의3(홍수통제소) ① ~ ③

(생 략)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u><신 설></u>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43조(한시정원) ① ~ ⑦ (생 략) <u><신 설></u>	(현행과 같음) ④ ----- -----. 1. ~ 18. (현행과 같음) <u>19. 도시침수예보 등에 관한 사항</u> ⑤ ----- -----. 1. ~ 7. (현행과 같음) <u>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 시설·관측설비의 설치·운영 및 관리</u> 제43조(한시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5</u>	<u>26</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u>	<u>2</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26</u>	<u>27</u>	+1
·	·	·	
·	·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u>29</u>	<u>31</u>	+2
·	·	·	
·	·	·	
<u>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1</u>	<u>20</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5</u>	<u>26</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u>	<u>2</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u>26</u>	<u>27</u>	+1
·	·	·	
·	·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u>29</u>	<u>31</u>	+2
·	·	·	
·	·	·	
<u>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9</u>	<u>18</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00	396	-4
일반직 계	400	396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8	7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 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56	55	-1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 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39	37	-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4</u>	• <u>23</u>	-1
일반직 계	<u>24</u>	<u>23</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 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u>2</u>	<u>1</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41</u>	• <u>738</u>	-3
일반직 계	<u>741</u>	<u>738</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29</u>	<u>128</u>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u>32</u>	<u>3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72</u>	<u>71</u>	-1
•	•	•	
•	•	•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42</u>	• <u>739</u>	-3
일반직 계	<u>742</u>	<u>739</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132</u>	<u>131</u>	-1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환경주사	<u>32</u>	<u>3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66</u>	<u>65</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49</u>	• <u>348</u>	-1
일반직 계	<u>349</u>	<u>348</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59</u>	<u>57</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52</u>	<u>54</u>	+2
•	•	•	
•	•	•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u>6</u>	<u>5</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51	350	-1
일반직 계	351	350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2	60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8	60	+2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6	5	-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8</u>	• <u>67</u>	-1
일반직 계	<u>68</u>	<u>67</u>	-1
•	•	•	
•	•	•	
행정서기	<u>3</u>	<u>2</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9</u>	• <u>68</u>	-1
일반직 계	<u>69</u>	<u>68</u>	-1
•	•	•	
•	•	•	
행정서기	<u>3</u>	<u>2</u>	-1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72</u>	• <u>176</u>	+4
일반직 계	<u>172</u>	<u>176</u>	+4
•	•	•	
•	•	•	
공 업 연 구 사 • 환 경 연 구 사 또는 시 설 연 구 사	<u>27</u>	<u>31</u>	+4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72</u>		<u>176</u>		+4
일반직 계			<u>172</u>		<u>176</u>		+4
	.		.		.		
	.		.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u>27</u>		<u>31</u>		+4
	.		.		.		
	.		.		.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19</u>		<u>117</u>	-2	
일반직		계	<u>119</u>		<u>117</u>	-2	
	.		.		.		
	.		.		.		
4급		이하	<u>116</u>		<u>114</u>	-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일반직	계						
4급	이하						